

# 휴스턴 한인회 개정 정관(안)

텍사스주 비영리법인

## 제 1 장

###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휴스턴 한인회" (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merican Association and Community Center of Houston"로 표기한다. 본회의 본부 소재지는 1809 Hollister St., Houston, Texas 77080 (또는 8806 Long Point Rd., Houston, Texas 77055)이다. 본회는 이사회 (이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텍사스주 내에 기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2 장

### 목적

본회는 현행 또는 개정될 수 있는 미국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501(c)(3)조 (이하 "세법")에 명시된 자선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자선과 교육을 위해 직접 또는 "타 비영리기관 또는 기관"에 기부를 통해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본회는 회원들이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한인들과 휴스턴지역사회의 이해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본회는 자선과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활동을 이행함으로써 본회의 자선과 교육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본회는 텍사스주 기업법(Texas Business Organizations Code) (이하 "기업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권한, 임무, 의결권 및 의무를 행사한다. 단, 세법 501(c)(3)조에 명시된 연방세 면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은 금한다.

## 제 3 장

### 회원

**제 1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Harris County 또는 인접 County 에 거주하는 만 18 세 이상의 (가) 한국 혈통을 가진자, (나) 한국 혈통을 가진자의 배우자 또는 (다) 본 정관 제 2 장의 목적을 지지 및 촉진하고자하는 자 (이하 "회원")로 한다.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이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대해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회원은 등록된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 5 년 마다 본회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입회절차에 따라 등록된 회원만이 본 개정 정관(안) (이하 "정관"이라하며 본 조항에 따라 개정될 수 있음) 또는 관련 법안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 월 이사회에서 정한 날짜, 시간, 장소 (본회 주요 활동 지역)에서 개최한다. 매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원은 정관에 따라 회장과 이사회 이사 (이하 "이사")를 선출한다. 매 정기총회에서 본회 회장은 회원들에게 본회의 업무상황 및 활동에 대해 보고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본회의 현 회계연도 현재까지의 수입지출내역 및 현 회계연도 잔존기간에 대한 예상수입지출내역, (나) 본회의 다음 회계연도 예상연간예산 (이하 정의 참고). 그리고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기총회에서 제안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제 3 조. 임시총회.** 전체 이사회의 25% 의결 또는 회장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체 이사회의 25% 의결 또는 회장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 시 이사회 의장 (이하 "이사장")은 정관 제 3 장 4 조에 의거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신속히 공고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주관하며 회장의 부재시, 수석부회장이 주관한다. 단, 임시총회의 목적이 회장 해임안 인준 또는 회장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하는 것을 다루는 경우,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주관한다. 이사회 또는 회장은 이사회, 회장이 각각 소집한 임시총회를 연기,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 4 조. 총회 공고.** 총회 개최일 10 일에서 50 일전까지 총회 장소와 일시를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서면 공고는 요금납 1 종 우편 (first class mail with postage prepaid), 직접 전달,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한다. 총회 공고에는 표결권이 있는 회원을 정하는 자격일을 명시하며 임시총회의 경우 총회 소집일 및 소집 목적을 명시한다. 소집공고는 송부 시 발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체국에서 요금납 우표를 붙인 공고를 수령 시 발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총회 개최 전 Harris County 와 인접 County 에서 발행되는 주요 한국

또는 영자 신문에 연속 2 주 동안 적어도 주 1 회 총회 개최를 공지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총회 정회.** (가) 회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투표 가능한 참석 회원 또는 위임 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경우 또는 (나) 총회를 주관하거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도록 자격이 부여된 임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총회를 정회할 수 있으며 같은 장소 혹은 다른 장소에서 총회를 재개할 수 있다.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이 참석한 총회 중 정회 결정이 선언된 경우 정회한 총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별도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 본회는 정회된 총회에서 일반총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다. 총회 정회가 30 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관 제 3 장 4 조에 따라 투표자격이 있는 회원에게 정회 공고를 통지해야 한다. 정회 후 새로운 자격일이 정해진 경우, 이사회는 정회한 총회에 대한 공지를 받을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일을 새로운 자격일 또는 그 이전 날짜로 정하고 새로운 자격일에 대해 투표자격이 있는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회의정족수.** 관련법 또는 본회 설립인가증 (Certificate of Formation)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총회의 회의정족수는 투표가능한 (직접 혹은 위임장을 통해 참석한) 회원의 50% 혹은 회원 100 명 중 작은 수로 한다. 회의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장 또는 총회에 직접 참석한 회원이 회의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관 제 3 장 5 조에 따라 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총회에서 연기된 총회의 시간과 장소가 공고되는 경우, 연기된 총회에 대한 별도 공지는 필요하지 않다. 연기된 총회에서 일반총회에서 다루고자했던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다. 회의정족수가 일단 충족되면, 이후 투표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회의정족수가 계속 충족된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조. 투표.** 관련법, 본회 설립인가증 또는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절차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 상정된 의결안은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총회에 참석한 투표가능한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본회 설립인가증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각 회원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 8 조. 위임장.** 정회원은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모든 위임장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회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가)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회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나) 이사회에서 선정한 제 3자가 운영하는 전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경우, 회원의 등록된 휴대폰으로 본인임이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다) 기타 이사회에서 신뢰가능하다고 간주되는 방법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위임장은 위임장에서 별도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위임장을 제출한 사안 의결 이후에는 위임장으로써의 유효성을 상실한다. 법률상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위임장은 발행한 회원이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 총회 목적상 모든 위임장은 본회의 사무총장 혹은 사무총장의 부재시 총회에서 사무총장 업무를 부여받은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9 조. 서면 의결 불가.** 회원의 의결이 필요하거나 허용되는 모든 사안은 반드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며, 회원의 서면 의결은 불가하다.

**제 10 조. 자격일.** 총회공고, 투표권한결정, 총회소집, 총회연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회원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는 자격일을 정할 수 있다. 자격일은 이사회에서 자격일 지정 의결을 한 후 여야 하며 자격일은 총회일로부터 10 일에서 60 일 사이로 해야한다. 만약 이사회에서 자격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 수령 및 투표권한이 있는 회원을 결정하는 자격일은 총회 소집 공고일 전날로 한다. 만약 소집 공고가 면제되는 경우 총회일 전날로 정한다. 공고 수령 및 투표권한이 있는 회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총회 정회 중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연기된 총회에서 투표할 권한을 지닌 회원을 정하는 자격일을 정할수 있다. 그러한 경우 연기된 총회의 공고를 수령할 권한을 지닌 회원을 정하는 자격일을 정관 제 10 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연기된 총회에서 투표할 권한을 지닌 회원을 정하는 자격일과 같은 날 혹은 이전 날짜로 지정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 관련법 및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과 더불어 다음의 사안은 회원의 의결없이 채택할 수 없다.

(가) 다음의 사안은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총회에 참석한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 부동산, 기타 중요 자산의 취득 또는 매각;
2. 본회 부동산의 10 년이상 장기 임대;
3. 본회 부동산 담보 대출;
4. 100,000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건설 및 재건축;
5. 본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저당권, 신탁증서, 질권, 담보계약 등 일체의 권리의 신청;
6. 회장 해임;
7. 본회의 합병 또는 유사한 법인과의 합병 승인;
8. 정관 제 13 장 3 조에 의거한 정관의 개정.

(나) 다음의 사안은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총회에서 참석한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 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 설립인가증 변경;
2. 본회의 사법 해산 신청;
3. 본회의 모든 혹은 상당 부분의 자산 매각;
4. 타 회사의 모든 혹은 상당 부분의 자산 취득;
5. 본회의 비사법해산 계획 승인;
6. 본회의 자발적인 해산 절차 취소.

(다) 본회의 회장과 이사 선출은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총회에 참석한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최다득표로 한다.

## 제 4 장

### 이사회

**제 1 조. 이사회**의 경영 구조. 본회의 모든 업무는 관련 법률과 설립인가증에 명시된 목적과 제약에 따라 이사회가 관리하며 이사회

**제 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수는 이사회

**제 3 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직권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클래스 I 과 클래스 II 로 나눈다. 초기 클래스 I 이사와 초기 클래스 II 이사를 제외하고 이사는 모두 2 년의 임기를 가진다. 초기 클래스 I 이사, 초기 클래스 II 이사, 직권이사를 제외하고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해당 이사를 선출한 회원 정기총회 직후 다음 해 1 월 1 일에 시작되고 그 이사의 후임 이사가 선출되는 회원 정기총회 직후 그 해의 12 월 31 일 또는 해당 이사의 사망,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해 종료된다. 본회의 초기 이사와 각 이사의 계층은 아래와 같다.

#### 초기 클래스 I 이사

Chan Ju Youn  
Jin Sook Ahn  
Rhee Haun  
Jisu Cook  
Victor Alvares  
Helen Chang  
Paul Yoon  
Tae Whan Chung  
Jae Myung Jung

#### 초기 클래스 II 이사

In Ho Kim  
Randy Sim  
Casey Youn  
Kristopher Ahn  
Ann Dorn  
Donna Murphy  
Jung Min Ju  
Andy Kim  
Chris Nam

#### 초기 직권이사

Eun Ju Park  
David Shin  
Mark Shim  
Min Jeong Kim  
E. Anna Ha

초기 클래스 I 이사의 임기는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Houston, Inc.와 Korean Community Center, Inc.의 합병 ("합병") 2 주년 후 12 월 31 일에 종료된다. 초기 클래스 II 이사의 임기는 합병 3 주년 후 12 월 31 일에 종료된다. 합병 후 두번째 회원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클래스 I 이사를 2 년 임기로 선출하며 임기는 그 다음해 1 월 1 일에 시작된다. 합병 후 세번째 회원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클래스 II 이사를 2 년 임기로 선출하며 임기는 그 다음해 1 월 1 일에 시작된다. 다음의 회원 정기총회에서 12 월 31 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이사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되 각 클래스의 이사를 매 2 년마다 선출한다. 이사 정원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각 클래스 계층에게 분할되어 각 클래스에 비례적으로 배분하여 정원 변동 후에도 클래스의 정원이 같을 수 있도록 한다. 이사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직권이사.** 회장, 휴스턴한인학교 교장, 회장이 지정한 3 명까지의 회원을 본회의 직권이사 (이하 "직권이사")로 임명한다. 휴스턴한인학교 교장을 제외한 모든 직권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휴스턴한인학교 교장인 직권이사의 임기는 휴스턴한인학교 교장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새로운 이사와 공석.** 이사회의 정원 증가 또는 사망, 사임, 해임 등의 이유로 공석이 생기는 경우 이사회 회의에서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마지막 남은 이사가 공석을 채운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이다.

**제 6 조. 자격.** 이사는 (가) 이사회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이상 만 25 세 이상이어야 하며, (나) Harris County 나 인접 County 에서 최소 3 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 소지자 이어야 하며, (라) 중죄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마) 정관 제 3 장에 명시된 등록 회원이어야 한다.

**제 7 조. 임명.** 인사위원회, 회장 및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을 위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정관 제 4 장 6 조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회원은 이사회 후보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10 월 15 일 전까지 지원을 마쳐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지원서를 검토, 승인한 후 회원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위해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 8 조. 정기회의.** 이사회는 매년 1 월 1 일에 시작된다. 이사회는 11 월에 열리는 정기회의를 포함하여 적어도 분기별로 회의를 갖는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개최한다.

**제 9 조. 특별회의.** 이사회의 특별회의는 회장, 이사장의 요청 또는 전체 이사회의 25% 찬성 의결로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회의의 장소와 일시는 회의를 요청한 사람에 의해 정해지며 장소와 일시를 공고한다.

**제 10 조. 회의 소집 공고.** 이사장은 각 정기회의와 특별회의의 개최여부를 명부에 기록된 각 이사의 주소로 요금납 1 종 우편 (first class mail with postage prepaid), 직접 전달,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가능한 경우 회의 소집 목적을 명시한다. 소집 공고는 우편으로 보낸 경우 우체국에서 공고를 수령했을 시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에 의해 일시와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회의의 경우 적어도 회의일 15 일 전에 반드시 모든 이사에게 공지해야 한다. 특별회의의 경우 적어도 회의일 7 일 전에 반드시 모든 이사에게 공지해야 한다. 단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특별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공고는 적어도 특별회의일 48 시간 전에 직접 전달, 이메일, 전화 또는 팩스로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48 시간 이내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특별회의일 경우 공지는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된다.

**제 11 조. 공고 권리의 포기.** 이사의 회의 출석은 그 회의에 대한 공고 권리의 포기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사가 회의가 부적절하게 소집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안건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 해당 이사의 출석은 공고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가 공고 권리 포기를 서명한 경우 (명시된 일시 전 후에 관계없이) 해당 이사에게 공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2 조. 전자 회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소위원회는 텍사스주 기업법에서 허용하는 범주에서 전자 회의 또는 기타 원격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3 조. 서면 의결.** 이사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거나 허용되는 모든 행동은 이사회 또는 소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의 서면 의결로 채택할 수 있다. 의결은 서면 또는 전자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사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서면 또는 전자로 이루어진 경우 결의안과 서면 동의를 회의록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의정족수.** 각 회의의 회의정족수는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회의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발표 외의 공고 없이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기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에게는 회의의 연기에 대한 공고가 주어져야 한다. 회의정족수가 일단 충족되면 회의 중 이사가 떠나면서 회의정족수가 부족해진다고 하더라도 회의정족수가 계속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도 회의에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 없이는 내려질 수 없다.

**제 15 조. 업무 수행.** 법규, 설립인가증 또는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안건은 의결된다.

**제 16 조. 보상.** 본회의 이사직 수행에 따른 급여나 보상은 없으며 본회를 대신하여 이사가 지출한 비용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7 조. 이사회비.** 각 이사는 본회의 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매해 최소 500 달러 또는 이사회가 정한 액수의 이사회비를 이사 임기동안 매해 1 월 1 일 전에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휴스턴한인학교 교장은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문화센터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이사는 이사회비를 환급받는다.

**제 18 조. 해임.** 이사회는 이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공고된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이사의 해임은 전체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이사의 해임은 해당 이사의 본회 직원으로서의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정기총회를 1 년에 두번 불참하는 경우 이사장의 서면 통보를 받을 것이며 세번 이상 불참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자동으로 해임된다. 단, 이사는 위임장을 통해 회의에 참석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 해당 이사는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19 조. 사임.**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사는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사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사의 사임은 사임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효력을 발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수락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제 20 조. 이사회의 결정.** 관련법 또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외, 다음에 명시된 사안은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가) 다음 사안은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1. 연간 예산 및 운영 계획 (이하"예산연간예산")의 승인;
2. 예산연간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1,000 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
3.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4. 본회 공인회계사 선임 승인;
- 5.이사의 해임;

(나) 다음 사안은 전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 1.이사장의 해임.
- 2.회장의 해임;
3. 본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저당권, 신탁증서, 질권, 담보계약 등 일체의 권리의 신청;
4. 정관 제 13 장 3 조에 의거한 정관의 개정;
5. 본회 설립인가증 변경;
6. 본회의 사법 해산 신청;
7. 본회의 비사법해산 계획 승인;
8. 본회의 자발적인 해산 절차 취소.

## 제 5 장

### 임원

**제 1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총무로 구성된다. 회장은 한 명 이상의 부회장을 포함하여 다른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2 조. 임명, 임기 및 자격요건.** 본회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이외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각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되거나 본인의 사망, 사임 또는 해임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임원은 회장의 감독과 지시를 따른다. 단, 총무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한다.

**제 3 조. 자격.** 임원은 (가) 이사회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이상 만 25 세 이상이어야 하며, (나) Harris County 나 인접 County 에서 최소 3 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 소지자 이어야 하며, (라) 중죄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마) 정관 제 3 장에 명시된 등록 회원이어야 한다.

**제 4 조. 임원의 해임.**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임원의 해임은 해당 임원의 본회 직원으로서의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 5 조. 임원의 사임.** 사임 최소 30 일전 회장에게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임원의 사임은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효력을 발행하기 위해 별도의 수락이 필요하지 않다.

**제 6 조. 임원의 공석.** 회장은 정관 제 5 장 3 조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책임자를 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잔여임기 동안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보상.** 이사회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본회의 임원직 수행에 따른 급여나 보상은 없으며 본회를 대신하여 임원이 지출한 비용은 예상연간예산안에 사전승인된 항목이어야 하거나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 6 장

### 회장

**제 1 조. 회장의 권한과 임무.** 회장은 총회를 주관한다. 회장은 본회의 감독과 운영에 대한 권한과 임무를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본회에서 섬기는 지역사회에서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정관 제 3 장 11 조 및 4 장 20 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과 임무 외에 회장은:

(가) 인사 관리, 부회장의 임명, 본회의 자산관리 및 통제, 본회의 승인된 예산연간예산 내에서의 경영과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예산연간예산 내의 정상 경영을 위한 모든 계약과 기타 부채를 증명할 서류를 서명, 이행할 수 있는 권한 (혹은 그런 권한을 부회장에게 부여할 권한)을 갖는다.

(다) 본 정관 또는 이사회가 부여하는 기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 2 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본회의 회장은 각 홀수 해에 열리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최다득표를 받은 이로 선출된다. (예를 들어, 2019 년, 2021 년). ~~인사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회장의 임기는 회장이 선출된 정기 총회 후 다음해 1 월 1 일부터 그 다음해 12 월 31 일 까지이다. 회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가)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휴스턴 지역 한인 사회 일원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선거관리 위원장은 한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추가로 선출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 명 또는 7 명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KAACCH 이사회에서 최소한 한 명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사회에 다수결로 승인된다.

(나) 모든 후보자는 20 통의 추천서(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에는 회장의 이름, 수석부회장 (EVP), 추천서 식별 번호, 추천인의 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지리적 자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천인의 텍사스 운전면허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소지 확인으로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편의와 신속함을 위해 운전면허증만을 수용할 것이다.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추천서를 대비하여 추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다) 수석부회장은 등록 시 지명되어야 하며 추천인들로부터 공정하게 지지받아야 한다. 수석부회장은 추천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추천서에 서명된 후에 수석부회장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새로운 추천서가 필요하다. 수석부회장은 아래 6.03 절에서 설명하는 회장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새로운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간 연장은 없다. 후보자들은 마감일 이후, 5 일(휴일 제외한)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아 신청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마) 후보자 미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되며,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책임은 KAACCH 이사회로 돌아간다. 새로운 회장은 인사위원회에 의해 알려지고 KAACCH 이사회의 다수결로 선출된다.

(바) 유권자 보상.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KAACCH 로부터 유권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물도 분배되지 않는다.

(사) 예산.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은 각 후보자당 \$3,000 로 광고, 교통, 사본들 및 식사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초과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이 된다.

(아) 후보자 환불. 후보자가 패배하더라도 등록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보자가 자격 요건으로 인해 자격이 박탈된 경우, 등록 비용 전액이 반환된다.

(자) 소송. 모든 당사자(KAACCH,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후보자)는 선거 조건에 서명하고 법적 권리를 포기하며 구속력 있는 중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다. 원고는 모든 당사자의 법적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KAACCH 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동에 대해 KAACCH 는 책임지지 않는다.

(차) 비밀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로 유지된다.

**제 3 조. 회장의 자격.** 회장은 (가) 이사회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이상 만 30 세 이상이어야 하며, (나) Harris County 나 인접 County 에서 최소 3 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다)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 소지자 이어야 하며, (라) 중죄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다) 정관 제 3장에 명시된 등록 회원이어야 한다. 회장 후보는 후보 등록 시 10,000 달러의 후보 등록비를 회장선거가 있는 해의 11 월 1 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만 총회에서 선출자격이 부여된다. ~~만약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 낙선한 후보에게는 후보 등록비의 50%가 환불된다.~~ 재직 중인 이사회 의장은 회장으로 선출 될수 없다.

**제 4 조. 회장의 해임.** 이사회는 회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공고된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회장의 해임은 전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회장의 해임은 해당 회장의 본회 직원으로서의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회장의 해임은 이사회 결정 이후, 30 일내로 이사장이 소집한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임시총회에 참석한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을 통해 인준되어야 한다.

**제 5 조. 회장의 공석.** 어떠한 사유로 회장직이 공석이 된 경우 및 회장의 잔여임기가 1 년 이하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회장의 잔여임기가 1 년 이상인 경우 회장 위치가 공석이 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 제 7 장

### 이사장

**제 1 조. 이사장의 권한과 임무.**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관한다. 이사회 지시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회 정책과 계획을 개발 및 실행한다. 이사장은 회장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 본회를 대표한다.

**제 2 조. 이사장의 선출 및 임기.** 이사장은 각 짝수 해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된다. (예를 들어, 2020 년, 2022 년).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장이 선출된 정기총회 후 다음해 1 월 1 일부터 그 다음해 12 월 31 일 까지이다. 이사장은 일회 이상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 현직 회장은 이사장으로 선출 될수 없다. 만약 현직 회장이 이사장으로 출마할 경우 회장은 이사장 선거 운동 이전에 회장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낙선하는 경우 회장직으로 복직할 수 없다.

**제 3 조. 이사장의 해임.** 이사회는 이사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공고된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이사장의 해임은 전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사장의 해임은 해당 이사장의 본회 직원으로서의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 4 조. 이사장의 공석.** 이사장직이 공석이 된 경우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출할 수 있다. 제 7 장 2 조에 관계없이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새로 선출된 이사장은 별도의 선출없이 추가로 2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제 5 조. 이사장의 보상.** 이사장으로서 본회를 위해 한 일에 대해 급여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본회를 대신하여 이사장이 지출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비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비용은 급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 8 장

### 소위원회

**제 1 조. 이사회 소위원회.** 이사회는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로 적어도 2명의 이사로 구성된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개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소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이 부여하는 권한을 갖는다. 소위원회의 구성원은 서면 통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고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초기 상임위원회는 제 8 장 2 조에 명시되어 있다.

#### 제 2 조. 상임위원회.

(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동등한 수의 클래스 I 과 클래스 II 이사로 구성되며 전체 이사회 3분의 1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의 의장은 소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인사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1. 인사위원회의 규칙과 규정;

2. 이사회 회원 자격에 대한 변경안;
3. 회원의 정기 총회에서 선출될 클래스 I 이사 후보나 클래스 II 이사 후보 전체 명부.

(나) 휴스턴한인학교위원회. 휴스턴한인학교위원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이다. 휴스턴한인학교 교장은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되며 매 짝수해 5월에 시작해서 2년의 임기를 가진다. 휴스턴한인학교 교장은 자동으로 휴스턴한인학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합병이 이루어 질 경우 재임하던 휴스턴한인학교 교장은 2020년 5월까지 그 직위를 수행한다. 휴스턴한인학교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휴스턴한인학교위원회의 규칙과 규정;
2. 봄, 여름, 가을 학기를 포함한 연간 예산;
3. 연차 재정 보고서;
4. 휴스턴한인학교 교사의 고용 또는 해고.

(다) 한국문화센터위원회. 한국문화센터위원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이다. 한국문화센터위원회 의장은 소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문화센터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한국문화센터위원회의 규칙과 규정;
2. 연간 예산;
3. 연차 재정 보고서.

(라) 건물관리위원회. 건물관리위원회는 본회가 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본회의 상임위원회이다. 건물관리위원회 의장은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건물관리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건물관리위원회의 규칙과 규정;



2. 연간 예산;
3. 연차 재정 보고서.

(마) 회원위원회. 회원위원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이다. 회원위원회 의장은 소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회원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회원위원회의 규칙과 규정;
2. 이사회가 지정한 자격일 이후에 총회를 위해 신속하게 만들어진 공식 회원 명부;
3. 연간 예산;
4. 연차 재정 보고서.

(바)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이다. 재정위원회 의장은 소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재정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각 회계연도에 대한 예상연간예산;
2. 연차 재정 보고서;
3. 본회 운영을 위해 제안된 자금 조성 또는 권유;
4. 모금 운동 제안.

(사) 휴스턴 올산 자매도시 위원회 (HUSCC). 휴스턴 올산 자매도시 위원회("HUSCC")는 본회의 상임 위원회이다. HUSCC 의장은 소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HUSCC 의장은 회원위원회의 규칙과 규정, 연간 예산 및 연간 재무 보고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HUSCC 의장은 위원회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해 휴스턴 시와 휴스턴 자매도시에 보고한다. 휴스턴 시는 휴스턴 자매도시 위원회의 규칙대로 위원회 구성원의 해임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 자매도시 기관은 휴스턴 시장과 시의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며, 자매 도시 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휴스턴 시의 모든 요구 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자매도시 관계를 종료하고 자매도시 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 (제 III 조, 제 1 항)

HUSCC 및 그 위원들은 기타 활동과 함께 다음의 활동들에 참여한다.

1. 휴스턴 자매도시는 이사회 회의에 매달 참석한다. HUSCC 의장이 불가능한 경우, HUSCC 는 휴스턴 시와 울산 광역시 간의 자매도시 관계를 대표할 위원을 휴스턴 자매도시의 월례 이사회 회의에서 지명한다.
2. 휴스턴 시와 울산 광역시의 주민들이 상호 인식하고 개인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국 시민으로, 그리고 국가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이러한 지식과 의식의 결과로 휴스턴 시와 울산 광역시의 주민들 간에 상호 관심을 지속적인 관계로 육성한다.
4. 이러한 의식과 관심을 바탕으로 상호에게 적절한 지원과 편안함, 교육 및 상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5. 국제 도시 협력 기관의 지역, 주, 국가적 프로그램을 촉진, 육성 및 홍보하는 기관으로서 참여하며, 이로써 다른 기관들과 휴스턴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6. 휴스턴 지역 사회 주민과 울산 주민 간의 우호적인 관계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육성한다.
7. 그리고 이러한 국제 도시 협력 기관들의 활동에 참여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 그룹 및 개인들 사이에서 조정 기구, 위원회 또는 대행기관으로 활동한다.

소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이사회의 검토를 받는다. 각 소위원회는 이사회가 검토를 위해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회 구성원은 모든 이사회

회의를 참석하고 소위원회의 모든 규칙, 절차, 정책 및 기타 지침과 결의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3 조. 회의정족수와 소위원회의 행동.** 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다르게 결의하지 않는 이상 소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소위원회 행동의 회의정족수로 여겨지며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소위원회 구성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은 그 소위원회의 결의로 간주된다.

**제 4 조. 대체 구성원.** 이사회는 사임, 해임, 부재 또는 자격요건 불충족의 사유로 인해 없는 구성원을 대체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이사를 소위원회의 대체 구성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대체 구성원을 해당 소위원회 회의에서 지명할 수 있다.

## 제 9 장

### 서류 서명과 재정 문제

**제 1 조. 계약서 및 서류.** 이사회는 제 12 장 1 조 및 본회의 이해 상충 정책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임원 또는 대리인이 계약을 맺고, 금융 서류를 집행하거나 제출하고 수표, 초안 또는 다른 대금 지불 명령과 기타 부채의 증거를 그의 이름이나 본회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이거나 특정 사례에만 국한될 수 있다. 한 명 이상의 임원이 서명해야 하는 금융 서류는 한 사람이 한 지위 이상으로 서명할 수 없다. 회장은 수표에 서명할 수 없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한 어느 본회의 임원 또는 대리인은 본회의 이름이나 본회를 대신하여 계약을 맺거나 금융 서류를 집행하고 또는 어떤 의무에 본회를 구속할 수 없다.

**제 2 조. 입금.** 본회의 자금은 이사회가 정하거나 이사회에게 위임받은 임원에 의해서 본회 이름의 은행, 신탁 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입금되어야 한다.

**제 3 조. 부동산.** 제 3 장 11 조 및 제 4 장 20 조에 의거 본회 부동산의 관리와 임대는 건물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4 조. 인증이 필요한 거래.** 예상연간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000 달러 이상의 거래는 제 4 장 20 조에 의거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제 5 조. 분리된 계좌.** 이사회는 이사회, 휴스턴한인학교, 회장의 지출, 한국문화센터위원회, 건물관리위원회에 대해 별도로 은행 계좌 개설 및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제 6 조. 회계 원칙.** 자금지출과 비용환급은 첨부 A 호에 명시된 회계원칙을 따른다. 첨부 A 호에 명시된 회계원칙은 이사회에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7 조. 예산 승인 절차.** 재정위원회는 매년 예산연간예산을 계획하여 그 해당 해 전 11 월에 열리는 이사회 정기회의 최소 30 일 전에 이사회 승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 승인을 위해 예산 연간 예산을 제출한 뒤 재정위원회는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대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제 8 조. 감사.** 본회는 본회 장부 및 기록에 대해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 2 년에 한번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간마다 감사를 받는다. 외부감사인 보고서를 짝수 해의 11 월에 개최되는 이사회 정기회의 최소 30 일 전에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 10 장

### 장부와 기록

**제 1 조. 장부와 기록.** 본회의 회장과 사무총장은 본회를 대신하여 설립인가증, 정관, 이사회 결의안,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소위원회 회의록등의 회의록을 포함하는 본회의 모든 활동과 거래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한다.

**제 2 조. 검사 및 복사.** 회원은 요구 목적을 명시한 서면 요구에 따라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시간에 본회 장부와 기록을 회원 본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검토 및 복사할 권리가 있다.

## 제 11 장

### 배상과 보험

**제 1 조. 배상.** 어떤 개인이 본회의 이사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의 위협을 받아 벌금, 합의금 지급 및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그 지출을 본회는 법에 의해 허용된 합리적인 범위까지 배상할 수 있다. 만약 (가) 그 개인이 부정직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소송 대상의 그 개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부정직함의 결과로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나) 그 개인이 개인적으로 재정적 이익 또는 법적으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다른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 본회로부터 배상 받을 수 없다.

**제 2 조. 보험.** 본회는 본회의 현재 또는 과거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을 위해, 혹은 본회의 요청에 의해 다른 회사, 파트너십, 합작 투자, 단독 사업, 신탁, 직원 복지 계획 또는 기타 사업의 이사, 임원, 파트너, 합작 사업 참가자, 소유주, 직원, 대리인 또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자를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책임에 대해 보험을 구입,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텍사스주 기업법에 의거 본회가 책임 배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책임 보험을 구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

## 제 12 장

### 이해 관계자 거래

**제 1 조.** (가) 현재 이사이거나 해당 거래 5년 이내에 이사로 재직한 자 (“과거 이사”), (나) 현재 또는 과거 이사의 가족, (다) 현재 또는 과거 이사가 현재 이사, 임원 혹은 주주로 있는 기업, 파트너십, 신탁 혹은 기타 기관, (라) 현재 임원이거나 해당 거래 5년 이내에 임원으로 재직한 자 (“과거 임원”), (마) 현재 또는 과거 임원의 가족, (바) 현재 또는 과거 임원이 현재 이사, 임원 혹은 주주로 있는 기업, 파트너십, 신탁 혹은 기타 기관과 본회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하였을시 정관에서는 이를 “이해 관계자 거래”라고 규정한다.

본회가 이해 관계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 본회는 이사회가 채택한 본회 이해 상충 정책에 명시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해 상충 정책은 비영리 및 자선 단체에 적용 가능한 이해의 상충을 지배하는 해당 법률을 보충하고 대체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해 상충 정책은 적절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이해 상충

정책이 준수되는 경우 본회의 회장, 이사장, 이사, 직원 및 회원이 본회와 거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가) 본회의 회장, 이사장 또는 이사, 임원, 직원, 회원 및 자원봉사자 중 이사회나 소위원회가 검토하는 사항 중 이해 상충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는 실제 또는 가능한 이해 상충의 존재와 그 잠재적인 이해 상충의 존재와 본질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회의 회장, 이사장 또는 이사, 임원, 직원, 회원 및 자원봉사자 중 이해 상충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거나 선언된 자는 특별한 이유로 이사회나 소위원회가 그의 설명이나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제안된 거래의 검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이해 상충을 가진 자가 먼저 가능한 이해 상충의 존재를 공개하였다고 해서 다른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해 상충을 가진 자는 그 거래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이해 상충이 밝혀진 제안된 거래는 이해 상충을 알린 후 전체 이사회 또는 해당 소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어야 한다. 이해 상충의 본질과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는 이가 투표에서 제외된 것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나) 각 이사는 매년 이해 상충 정책 사본의 수령을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하며, 준수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 본회는 이해 상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본회 운영상황을 재검토해야 한다.

## 제 13 장

### 기타 조항

**제 1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에 시작하고 12 월 31 일에 종료한다.

**제 2 조. 요건.** 본회 순이익이나 자금의 어떠한 부분도 (본회에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외) 어느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어떠한 회원, 이사, 임원 및 개인도 본회의 해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본회의 활동에는 선전 활동, 법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본회는

공직 후보를 위한 정치 운동에 참여하거나 개입 (선거물 발행 또는 배포 포함)할 수 없다. 정관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회는 미국 세법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501(c)(3) 조 (혹은 향후 미국 세법 조항)에 따라 비영리단체로서 이행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3 조. 정관 개정.** 정관은 (가)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과 (나)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총회에 참석한 회원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을 통해 변경,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정관의 변경, 개정 또는 폐지는 적법하게 소집되고 열린 이사회 회의와 회원 총회에서만 가능하며 회의 소집시 정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임시회의 소집 공고 절차에 따라 공고, 통지해야 한다.

**제 4 조. 세칙 제정 시행.** 이사회는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세칙을 제정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세칙은 본 정관의 목적에 위반하면 제정할 수 없다.

**제 5 조. 번역.** 정관의 영문본과 국문본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 첨부 A 호

이사회는 자금 지출 및 비용 환급에 대한 절차와 규칙을 규정하되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가) 재정 투명성을 위해 체크 (check) 사본과 증빙자료를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한다.

(나) 모든 지급 및 환급 요청과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본회의 공인회계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한다. 증빙서류에는 지급 및 환급을 요청한 소위원회 의장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반드시 받는다. 본회의 공인회계사는 체크를 프린트하고 체크와 증빙자료를 스캔해서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한다.

(다)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한 자료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패스워드를 적용하거나 해당 부분만 삭제하여 모든 사람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다.

(라) 본회의 체크는 본회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고 서명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2 명까지 체크를 서명할 수 있다.

(마) 재정위원회의 구성원은 본회에서 발행하고 서명한 500 불이상의 체크에 대해 다음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의 검토를 받는다.

(바) 모든 기부금은 기부자 이름 또는 "익명"이라고 명시된 목록, 기부액, 그리고 총액을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목록의 PDF 파일은 KAACCH 웹사이트에도 업로드되어야 한다. 발행된 숫자와 장부 항목이 일치하도록 총액에 대한 은행 입금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월에는 세무 관련 용도로 기부자들에게 영수증 편지들이 발송되어야 한다. 이 편지들의 총 금액은 이전 해에 모금된 기부금의 총액과 일치해야 한다.